

스탁론(대출) 상품 설명서

준법심의필 2024-2Ca-019 (2024.11.28)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계약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아래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 은퇴자 ☐ 주부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 연체정보등 등록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2. 금리의 산출근거,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7.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기한이익의 상실) 11. 연체정보 등의 등록이 포함됩니다.

-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스탭론은 MG캐피탈 주식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증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그 증권계좌의 주식, 예수금을 기초로 계좌평가하여 당사 상품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해주고 리스크관리시스템(RMS)등을 통하여 담보계좌를 관리하는 인터넷대출 상품입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성' 확인)

○ 리스크관리시스템(RMS) 운영

고객의 안전한 주식투자 및 대출금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이 운영되며, 해당 시스템에 의해 일정종목에 대한 매수 및 보유가 제한되거나, 자동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당사 **홈페이지의 계좌운용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제공

대출 신청시 고객의 증권거래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당사에 제공하게 되며, 해당 담보는 계좌운용규칙의 따라 운영되며 계좌동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

- 고객명의로 증권계좌에 예수금 및 주식을 질권 담보로 하여 대출금융기관이 계좌평가금액의 **최대 300%(최고 3억원)까지 대출하여 주는 상품으로, 주식가격의 변동에 의해 대출금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평가금액이 최저담보유지비율(또는 로스컷 비율)미만으로 하락하여 즉각적인 반대매매(로스컷)나 주식시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매매의 제한이나 계좌의 동결이 발생 할 수 있사오니 고객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 로스컷 비율은 고객이 대출신청 시 (120%,122%,125%) 중 선택한 최저담보유지비율임

☞ 담보비율 산정공식 = (매매체결기준일) 계좌담보평가금액 ÷ 대출원금 × 100

- 고객의 증권계좌 담보평가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하한가 기준으로 수량 계산하여 **자동반대매매**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스탭론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계좌내의 일부 현금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모든 증권의 입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계좌운용규칙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는 대내외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기준일로 부터 1개월간 공시됩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속지가 필요한 사항

Q. 대출이용과 신용도의 관계는?

→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 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확인)

Q.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기간 만기 전까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 상환가능하며,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등 비용부담' 확인)

□ 원리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점수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체이자율(지연 배상금율)', '11. 연체정보 등의 등록' 확인)

* 예)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월 연체이자 254,794원(연체이자율 3% 적용)이 발생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Q.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gcap.co.kr>) 및 고객센터(1588-9688)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스탁론		
적용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범위 기재)%	대출신청금액	원
금리적용방식	☒ 고정 ☐ 변동 ☐ 혼합	대출기간 (실행일~만기일)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및 요율	☒ 비대상 ☐ 대상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본 대출상품은 **20세~70세**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고객의 신용상태, 담보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상품에 따라 확정된 대출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본 대출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상품입니다.
- ☐ 연장시 금리는 연장시점 회사의 금리기준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 금리의 산출근거

- ☐ 금리의 변동 유무
 - **고정금리** : 대출성상품이 실행될 때 결정된 금리가 한 번 결정되면, **‘약정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 대출성상품이 실행될 때 금리가 결정되더라도, 대출성상품의 약정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일정 주기마다 달라지는 금리’**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 : 코픽스연동금리, 금융채연동금리 등)
 - ※ 일반적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변동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고정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기라고 해도,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예상 대출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유불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상 대출기간, 향후 시장금리 전망,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참조)
- ☐ 금리의 산출 및 변동근거
 - 고객에게 실제 적용되는 **약정금리**는 ①**원가요소**와 ②**마진(목표이익률)**, ③**조정금리**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①)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원가들을 산정합니다.
 - **기준금리**(①+②)는 이러한 원가요소(①)에 목표이익률(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 **조정금리**(③)는 프로모션이나 기타 요건 등에 의해서 기준금리에 가감되어 실제 약정금리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약정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신용평점 상승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상단의 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 수수료 등 비용부담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스탁론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고객 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고객 부담 7만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고객 부담 17만5천원)

-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부담)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금전 및 재화,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5 대출금의 상환방법

□ 대출금의 납입

- 고객님의께서는 대출금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원금만기상환 선택시)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 제공 시, 원리금은 증권사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 자동이체로 원리금 납입 시, 납입일에 통장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실행한 납입일의 오전 8시 이전 청구되며, 업무시간 내에 출금되므로 그 시간 내에 원리금 잔액이 현금으로 있어야 하고 최저담보유지비율+1% 이상이어야 자동이체됨)
-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납부가 이월되며,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자동이체 계좌는 변경불가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gcap.co.kr>)를 통한 실시간 원리금 상환가능, 휴일(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은 익영업일에 납부 가능)
- 결제일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이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만기시 상환 예상액
만기일시상환	11,999,992원	1회 ~ 23회 83,333원 (이자) 24회 10,083,333원 (원리금)

□ 만기일시 상환방식

특징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 도래 시 일시에 원리금을 상환하여 부담 이 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6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 다만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1)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30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1억2천만원(월 1백만원 분할상환), 약정이자율 연 5%,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인 신용대출의 분할상환금 (1백만원) 및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기간	연체이자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30일분	[지체된 분할상환금+약정이자](150만원)×연8%(5%+3%)×30/365	9,863원
연체31일~60일분	원금(1억2천만원)×연8%(5%+3%)×30/365	789,041원
계		798,904원

※ 단, (1)~(4)에도 불구하고 원금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채무자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대출원금이 아닌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거래의 경우, 아래 예시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인 경우,
[10x(약정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x30/365] + [90x대출이자율x30/365] 부과

* 분할상환금 및 기한이익상실전 발생한 약정이자는 별도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만을 1개월을 30일로 보고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는 전체 대출잔액이 아닌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7 |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 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즉시 상실하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유)

- 금융회사의 서면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예) 주요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이자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8 | 담보권 설정 및 권리변동

※ 담보권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질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 내 근저당권설정비용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9 |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신용공여,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입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 해지에 관한 사항

- 해지사유
 - 약정만기일 도래 : 연장 미신청 또는 연장신청 거절된 경우
 -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압류등의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한 경우
 - 담보비율 미달로 인한 RMS자동 로스컷 된 경우
 - ☞ **RMS 자동로스컷은 고객 증권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최저담보유지비율(120%, 122%, 125% 중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선택한 담보비율) 미달인 경우 자동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것임**
- 고객이 중도상환 등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대출이자 등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하고 고객의 증권계좌로 출금요청 합니다.(납부 시 해지 처리 진행)
-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인지세 등)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시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은 중도상환이 불가 합니다.
- **스탁론 중도상환은 영업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상환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gcap.co.kr>) 접속하여 상환신청 가능합니다.

11 | 연체정보 등의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①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②'연체정보 등' 정보(연체사실 등), ③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12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말함)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3 | 청약의 철회(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말함)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 자료열람요구권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고객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는 고객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5 |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gcap.co.kr> ▶ 고객센터 ▶ 부가정보 ▶ 개인신용정보 고객센터 신청) 또는 고객센터(1588-9688)상담원 통한 신청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16 | 그 밖의 유의사항

□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최초 심사에 비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스탭론 상품은 만기 연장이 불가한 경우도 존재하니, 세부사항은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계좌 평가금액이 로스컷 비율 및 만기해당월 이자를 포함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text{보유주식} \times \text{현재가}) + (\text{보유현금})] - [(\text{대출금} \times \text{로스컷비율}) + \text{만기월이자}] > 0$$

👁 로스컷 비율은 고객이 대출신청 시 (120%, 122%, 125%) 중 선택한 최저담보유지비율임
- 신규금리와는 별도로 연장금리 적용
- 개인사업자 고객은 만기연장시점 휴·폐업은 만기연장불가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mgcap.co.kr>) 접속하여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

- ☐ 본 상품을 연체하셨을 때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3%의 연체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 내에서 적용되며, 대출원금이 1천만원일 경우 연체 발생 시에 최대 월 연체이자가 25,479원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반대매매 실행 후 대출원리금 상환 처리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을 계약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해당여부	☐	본인은 MG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설명서를 확인 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하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설명서의 내용 중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하고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65세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 대상으로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서를 확인 하였으며, 그 내용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